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건설공사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으로 하되 1년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수있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청약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신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 회사가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판매사원(직원, 대리점, 설계사)에게 내시거나 저희 회사에 직접 납입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환급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보험금 청구 및 절차

보험사고 발생시는 그 사실을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고,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보험료의 환급

< 일반/공장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재산종합보험 >

①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 ③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④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I, 개인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II, 영업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

- ①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③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건설공사보험 >

- ①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무효의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2. 효력상실 또는 (일부)해지의 경우
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가. 공사물건(제3자 배상책임포함) : 환급보험료 = (총보험료-경과보험료)×(1-0.25)
단, 경과보험료 =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점의 기성고×원보험요율
나. 건설 및 조립용 기계 : 환급보험료 = 총보험료×(1-단기요율)
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가. 공사물건(제3자 배상책임포함) : 환급보험료 = 총보험료-경과보험료
단, 경과보험료 =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점의 기성고×원보험요율
나. 건설 및 조립용 기계 : 환급보험료 = 총보험료×
- ②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①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가. 무효의 경우 :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나.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 : 경과한 기간동안 발생한 인건비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된 보험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 또는 효력상실이 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가. 경과한 기간동안 발생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추정된 연간보험료에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나. 건설공사 등 공사장별 계약의 경우에는 경과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로 계산된 보험료를 뺀 잔액의 90%해당액

3. 위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과한 기간동안 발생한 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보험기간 일수에 대한 경과된 보험기간의 일수를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②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9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